

개호보험에 대해서

고베시 개호보험과

○65세 이상 이신 분들의 개호보험료

65세 이상 이신 분들의 보험료는 본인이나 가족분들의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4년도~2026년도의 한 명의 연간 보험료는

① 본인이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② 본인이 노령 복지 연금을 받고 있고, 또한 그 세대 모두에게 시민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③ 세대 모두에게 시민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또한 본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 수입과 합계 소득금액(※) 합계가 82.65 만엔 이하인 경우	⇒	18,556 엔 (월평균 1,547 엔)
세대 모두에게 시민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또한 본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 수입과 합계 소득금액(※)의 합계가 82.65 만엔을 넘고 120 만엔 이하인 경우	⇒	34,348 엔 (월평균 2,863 엔)
세대 모두에게 시민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또한 본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 수입과 합계 소득금액(※)의 합계가 120 만엔을 넘는 경우	⇒	53,693 엔 (월평균 4,475 엔)
본인에게 시민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 세대에 시민세가 부과되는 분이 있는 경우, 또한 본인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연금 수입과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가 82.65 만엔 이하인 경우	⇒	71,064 엔 (월평균 5,922 엔)
본인에게 시민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 세대에 시민세가 부과되는 분이 있는 경우, 또한 본인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연금 수입과 합계 소득(※)의 합계가 82.65 만엔을 넘는 경우	⇒	78,960 엔 (월평균 6,580 엔)
본인에게 시민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	⇒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90,804 엔 (월평균 7,567 엔)~ 225,036 엔 (월평균 18,753 엔)

※합계 소득 금액이란 수입으로부터 필요 경비 (공적 연금등 공제나 급여 소득 공제등)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40 세 ~64 세 의 분 들 의 개 호 보 험 료

가입한 의료보험의 보험료에 포함되어 납입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자 마다 산출한 계산방법으로 보험료를 결정)

○개호보험으로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재택 서비스

<p>방문 개호 (홈 헬프 서비스)</p> <p>홈 헬퍼가 가정을 방문하여 입욕·배설등의 신체 개호나 조리 세탁·청소·쓰레기처리등의 생활 원조를 합니다.</p>	
<p>통소 개호 (데이 서비스)</p> <p>데이 서비스 센터 등에 다니며 입욕이나 식사제공, 기능 훈련(리ハビリ레이션)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통소 리ハビリ레이션 (데이 케어)</p> <p>노인보건시설 등에 다니며 전문가에 의해 기능 회복 훈련(리ハビリ레이션)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단기 입소 생활 개호 (쇼트 스테이)</p> <p>특별 양호 노인 홈 등 단기간 입소하여 개호나 일상생활의 원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단기 입소 요양 개호 (쇼트 스테이)</p> <p>노인보건시설 등에 단기간 입소해 개호나 필요한 기능훈련 (리ハビリ레이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복지 용구 대여</p> <p>휠체어, 전동 침대, 보행기등의 복지 용구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p> <p>※요개호 인정에서 경도라고 판정된 경우 이용할 수 없는 용구가 있습니다.</p>	<p>주택 리폼비용 지급</p> <p>주택의 난간 설치나 계단의 높낮이를 고치는 등의 일부 비용을 지급합니다.</p> <p>(리폼비용 상한은 20 만엔으로 그 범위내에서 걸린 비용의 9 할분 (일정이상 소득자는 8 할 또는 7 할분) 을 지급합니다.)</p>

시 설 서 비 스

(※개호 노인 보건시설·개호 의료원은 「요개호 1~5」이라고 인정 받은 분,
특별양호 노인홈은 원칙 「요개호 3~5」의 분이 대상입니다.)

주택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특별양호 노인홈」 등의 개호보험 시설에
입소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보험 시설 입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에가오 노 마도구치」에서
케어 매니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① 65세 이상 이신 분들

입욕, 배설, 식사등 일상 생활 동작이 항상 개호가 필요한 경우(요개호 상태), 혹은, 항상 개호가 필요하지 않아도, 가사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요지원 상태)라고 인정이 되면,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40세 ~64세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들

노화에 의해 생기는 병(뇌혈관 질환이나 인지증등의 16 종류의 특정 질병)에 따라서 요개호 상태나 요지원 상태라고 인정받으면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부담은 1할입니다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2할 또는 3할)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걸린 비용의 1할 (2할 또는 3할)이 이용자의 부담이 됩니다. 다만 1개월의 이용자 부담이 일정액(*)을 넘는 경우 구청에 신청하여, 초과된 금액(고액 개호 서비스비)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마다 시민세의 과세 상황등에 따라, 15,000엔~140,100엔

보험료의 체납에 주의해 주십시오

○ 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개호 서비스의 비용을 **일단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후일 구청에 신청하면 9할(8할 또는 7할)이 환불 됩니다.)

○ 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환불 되는 9할(8할 또는 7할)의 지불금이 **일시 중지되거나**

체납 보험료에 충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납부 기한으로부터 2년 이상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시에 미납 기간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3 할(또는 4 할)이 됩니다. 또한 3 할(또는 4 할)이 된 기간중은 고액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이나 식비·거주비의 부담경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요개호(要介護)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①요개호 인정의 신청

「에가오 노 마도구치」나 「안신 수코야카 센타」에 신청서나 신청수속등을 의뢰하시면 편리합니다.



②인정 조사

고베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조사원이 가택이나 입원처를 방문해 몸상태 등 전국 공통인 74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합니다.



③ 주치의 의견서

다니고 계시는 병원 의사에게, 의견서를 작성 받습니다. (고베가 의뢰합니다)

④ 개호 인정 심사회

전문가에 의한 심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가를 심사·판정합니다.

⑤ 인정·결과 통지

개호 인정 심사회의 판정 결과를, 신청자 본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⑥개호 서비스의 이용

요개호 1~5 의 경우에는 「에가오 노 도구치」, 요지원 1·2 의 경우에는 「안신 수코야카 센타」에 의뢰하여, 케어플랜 작성, 서비스 이용 조정이나 예약등을

합니다.「안신 수코야카 센타」는 지역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 **개호보험 제도에 관해 자세한 사항** (구조,수속,에가오 노 마도구치의 정보 등)
고베시 종합 콜센터 (일본어) ☎0570-083-330 ☎078-333-3330
고베시 개호보험과 (일본어) ☎ 078-322-6228

- **인정 조사등을 할 때 통역 자원봉사자 파견을 받으시려면**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친족등의 통역 원조가 없는 분)

파견 단체

[~~한국어~~]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고베정주외국인 지원센터 ☎ 612-2402

[중국어]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고베정주외국인 지원센터 ☎ 612-2402

[중국어]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다언어센터 FACIL ☎ 736-3040

[베트남어]베트남 꿈 KOBE ☎ 736-2987

[베트남어]특정비영리활동법인 고베정주외국인 지원센터 ☎ 612-2402

[포르투갈어] 간사이 브라질인 커뮤니티☎ 222-5350